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상정 (3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1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1
2021-1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소)	7
2021-14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9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들의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난극복과 지역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예술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1)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2)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그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

나.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4항)

다.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 1) 준용: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당연히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 재기재로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2) 「예술인복지법」 제2조

나. 예산조치: 2021년 예산 1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3.~2. 15.(「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u>“지역예술인”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
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6조(지원사업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
<u>제8조(준용)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삭제></u>
<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제></u>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지역예술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지원

나. 관련 조문

1) 안 제6조제4항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지원액 \ 연도	2021년도
군비	120백만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도)

가. 지원대상: 거창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 지역예술인

나. 사업비: 120명 x 1백만원 = 1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정 상 준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1-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자들에게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시적 재정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2013. 9. 25.)·시행하였으나,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가 완료(2016. 8.)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 3. 30)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완화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정책 결정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나.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다.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 19.~2. 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변경)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1) 전 군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2)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1) 지원대상: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변경)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2)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사는노인 등

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 29.~2.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 폰)				
설치장소							
주택유형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지원범위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주택화재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우선지원대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tr><td style="padding: 5px;">대 상 구 분</td><td style="padding: 5px;">☐ 독거노인 거주 주택 ☐ 장애인 거주 주택 ☐ 소년소녀가정 세대 거주 주택 ☐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td><td style="padding: 5p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 그 밖의 세대()</td></tr></table>			대 상 구 분	☐ 독거노인 거주 주택 ☐ 장애인 거주 주택 ☐ 소년소녀가정 세대 거주 주택 ☐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 그 밖의 세대()
		대 상 구 분	☐ 독거노인 거주 주택 ☐ 장애인 거주 주택 ☐ 소년소녀가정 세대 거주 주택 ☐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 그 밖의 세대()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거 창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20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병 주